제2993호 2023.4.21. 발행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홍,보 담 당 관주 재 봉

전화: 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41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공 고

2 6 -	
제2023-410호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해제 공고	8
제2023-413호 : 양동 도시장비형 재개발구역 제4-2-7지구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제2023-415호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악) 공라공고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1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압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심의 결과에 따라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안 제3조)
- 지원다의 구성 및 다장의 임무·권한 (안 제4조, 제5조)
- 실무팀의 편성 및 지원단의 설치 (안 제6조,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8조)
- 재정지원 (안 제9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 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72, 팩스: 02-3396-8612, email: rosekw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q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례 제 ठ्

서울특별시 증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유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워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 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서울 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 ④ 지원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다잣의 임무·권하) ① 다잣은 재난형장에서 지원다의 업무를 총확하다

-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유영을 조정함 수 있다.
-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 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 1. 상황총괄팀
- 2. 모집·배치팀
- 3. 활동관리·지워팀
-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 3. 자원봉사자의 규모
-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 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 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다.
-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의 설치·유영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 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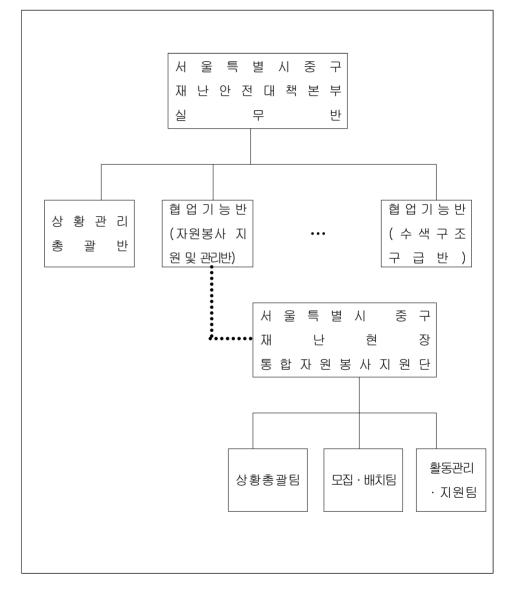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3호 30-6 2023. 4. 21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 직무분담표 예시 > ──

		지역구군검표 에서 기				
팀명(예시)	직위	담당 사무				
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지원 필요사항 파악 ▶ 재난 자원봉사활동 수요 조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 공유·보고 등) 				
모집·배치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봉사자 안내 및 상담 ▶ 재난 자원봉사활동 개시 전 사전안전교육 실시 (피해 상황 안내·활동 시 유의사항 등) 				
활동관리· 지원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재난 위험요소 지속 관찰 ▶ 재난 물품·장비 소요 등 파악·지원 ▶ 재난 자원봉사활동 평가 (모니터링·활동 기록 등) ▶ 자원봉사자 편의시설 지원 				

비고

•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10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해제 공고

청소년보호법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고대상 및 내역

- 건 명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해제

- 지정해제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역 앞 일대

- 지정해제 일자 : 2023년 4월 17일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정책과 (☎02-3396-4676)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13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2·7지구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09,26,)로 정비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 특별시고시 제1999-48호(1999.03,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30호(2006.04.13.), 중구고시 제2015-16호(2 015.03,12.), 중구고시 제2016-34호(2016.04.2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17-7호(2017.01.2 5.)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우리 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2·7지구와 관련하 여,
- 2.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공람요지 (아래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
-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 면 적: 20,350.7㎡ (대지 20,016.2㎡, 정비기반시설 334.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식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대표이사 이자상)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남대문로5가)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01.25.
- 6)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지상/지하)	높 이 (m)	주용도	비고
기존: 9,237.39 중축: 2,292.78 합계: 11,530.17	57.60	기존: 82,856.46 중축: 58,365.21 합계: 141,221.67	524.35	기존 23층/2층 <u>증축 20층/6층</u>	기존: 71.35 중축: 85.37	숙 박 시설	

제2993호 30-10 2023. 4. 21

- 나. 사업시행계획 폐지 사유 : 현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 추진 예정으로 기존 사업시행계획 폐지
- 다. 공람 기간 : 2023.04.21.(금) ~ 2023.05.08.(월) (17일간)
- 라. 공람 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4)
- 마. 기타 관계 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 제4-2·7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 -

-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09,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8호(1999,03.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2020,01.16.)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된, 우리 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4-2·7지 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7 14	7 odmi	01 31		면 적(㎡)		비고
구 분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기 정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남대문로5가 395일대	91,872.6	-	91,872.6	건설부고시
변경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남대문로5가 395일대	91,872.6	증) 2,554.2	94,426.8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 정비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면적 변경	• 양동 숲길 보행로 조성사업 범위를 양
	395일대	91,872.6㎡ → 94,426.8㎡	동 도시장비형 재개발구역 내 편입

2. 지구 지정(변경) 조서

제2993호 30-12

				시업시행	시업계	박내역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지구면적 (㎡)	획지면적(㎡)	정비기반 시설 등(㎡)	비고
	합 계			94,426.8	70,417.60	11,376,3	-
기 정	양동	1	남대문로5가 581번지	5,178.4	3,828.4	1,350.0	완료
기 정	양동	2	남대문로5가 631번지	6,827.4	5,435.4	1,392.0	완료
기 정	양동	3	남대문로5가 827번지	7,446.1	5,346.5	2,099.6	완료
기 정	양동	4-1	남대문로5가 500번지	3,592.9	2,429.4	1,163.5	완료
기 정	양동	4-2-7	남대문로5가 395번지	20,350.7	20,016,2	334.5	시행지구
변경	양동	4-2-7	남대문로5가 395번지	20,350.7	19,177.7	1,173.0	시행지구
기 정	양동	5	남대문로5가 267번지	8,668.8	6,107.1	2,561.7	완료
기 정	양동	6	남대문로5가 526번지	3,835.5	3,081.1	754.4	완료
기 정	양동	8-1	남대문로5가 537번지	3,740.4	3,740.4	-	존치지구
기 정	양동	8-2	남대문로5가 535번지	1,676.1	1,676.1	-	시행지구
기 정	양동	9-1	남대문로5가 541번지	10,583.4	10,583.4	-	존치지구
기 정	양동	9-2	남대문로5가 567번지	3,013.3	3,013.3	-	존치지구
기 정	양동	9-3	남대문로5가 575번지	97.2	97.2	-	소단위 관리지구
기 정	양동	9-4	남대문로5가 555번지	97.1	97.1	-	소단위 관리지구
기 정	양동	9-5	남대문로5가 554번지	96.9	96.9	-	소단위 관리지구
기 정	양동	9-6	남대문로5가 542번지	178.6	178,6	-	소단위 관리지구
기 정	양동 10 남대문로5가 544번지		2,815,2	2,815.2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기 정	양동	11-12	남대문로5가 580번지	3,595.9	2,713.8	882.1	시행지구
기 정		계획기반시설	설(기 존 국공유 지 포함)	10,078.7	-	-	-
변경		계획기반시설	널(기존 국공유지 포함)	12,632.9	-	-	-

■ 지구 변경사유서

지구명	위치	변 경118	地水品
4-2·7지구	남대문로5가 395일대	 정비기반사설 등 면적 변경 334.5㎡ → 1,173.0㎡ 획지 면적 변경 20,016.2㎡ → 19,177.7㎡ 	• 기반시설 등 부담계획에 따른 확자면적 변경

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시압계학내역		비율	
구분	명칭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교
	합계	91	,872.6	증) 2,554.2	94,426.8	100.0	-
	소계	20	,616.5	증) 3,392.7	24,009.2	25.4	-
	도로	17	,285.5	증) 2,554.2	19,839.7	21.0	-
정비	공원	2.	,478.9	감) 334.5	2,144.4	2,3	-
기반 시설	공공청사		-	증) 1,173.0	1,173.0	1.2	
등	(D얼시자뷔회사	8	352,1	-	852,1	0.9	-
	사회복자사설②		-	증) (1,173.0)	(1,173.0)	-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소계	71,256.1		감) 838.5	70,417.6	74.6	-
	1자구	3,828.4		-	3,828.4	-	일반정바지구
	2자구	5,435.4		-	5,435.4	-	일반정비자구
	3자구	5,346.5		-	5,346.5	-	일반정바자구
	4-1지구	2,429.4		-	2,429.4	-	일반정바자구
	4-2·7지구	20	,016.2	감) 838.5	19,177.7	-	일반정바자구
	5자구	6.	,107.1	-	6,107.1	-	일반정바자구
	6자구	3.	,081.1	-	3,081.1	-	일반정바자구
회지	07]7	8-1자구	3,740.4	-	3,740.4	-	존차가구
	8자구	8-2자구	1,676.1	-	1,676.1	-	일반정바자구
		9-1자구	10,583.4	-	10,583.4	-	존차가구
		9-2자구	3,013,3	-	3,013,3	-	존차가구
	07]7	9-3자구	97.2	-	97.2	-	
	9자구	9-4자구	97.1	-	97.1	-	소단위
		9-5자구	96.6	-	96.6	-	관지구
		9-6자구	178.6	-	178.6	-	
	10자구	2	,815,2	-	2,815.2	-	-
	11·12자구	2	,713.8	-	2,713.8	-	일반정비자구

■ 변경사유 : 양동숲길 보행로 조성사업 범위를 구역 내로 편입함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및 제4-2·7지구 정비계 획 변경에 따른 지구 내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및 획지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7 14		사업계획내역		비율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미끄
합 계		91,872.6	증) 2,554.2	94,426.8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1,872.6	증) 1,574.3	93,446.9	99.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753.3	753.3	0.8	
구기시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26.6	226.6	0.2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제2993호 30-14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 계	1-47	방화자구	중구 봉래동2가 128일대	7,009.68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7 14		i	규모		기능	사용	연장	기점	2.21	주요	41 4 7d7d01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u> </u>	형태	(m)	/11	중점	경과지	최초 결정일	미끄
기정	중로	1	201	10-40	잔 돼	알 도로	370	냠爬로 57尚10	· 培肥型 57/693	-	건설부과 제380호 (78,11,30,)	-
기정	중로	1	211	20	잔 5로	알 도로	81	냠爬로 57 500-2	· 宇惿로 57 6 31-1	-	건설부과 제380호 (78,11,30,)	-
7정	중로	3	1	13~15	짮 돼	알 도로	69	냠爬로 57] 631-1	냠惿로 57 823	=	-	=
7정	중로	3	1	8~10	짮 돼	알반 도로	54	냠문로 57)82 3	냠爬로 57 6 11	-	-	1
7정	중로	1	212	20	짮 돼	알 도로	152	냠爬로 57) 823	냠썐로 57 521	=	건설부고시 제380호 (78,11,30,)	-
7청	중로	3	2	13	잡 5로	알반 도로	64	냠문로 57) 581-1	냠爬로 57 /644- 2	=	-	=
7청	소로	2	1	8	잔 돼	알 도로	50	宇服로 57 823	宇提 57 823	-	건설부고시 제380호 (78,11,30.)	-
7정	소로	2	2	8	짮 돼	알 도로	70	냠문로 57) 823	냠썐로 57 823	-	건설부고시 제380호 (78,11,30,)	-
7정	소로	3	2	6	짮 돼	알반 도로	16	냠爬로 57 580-1	냠爬로 57 549	-	-	-

- 5		i	卍		->	사용	연장	-1-1	1	줲	ala mbhl	
구분	둾	퍮	변호	폭원	걩능	铺	(m)	기점	좲	潮	최초결정일	비고
7청	소로	3	А	6	탁 로	보항전 용 도로	43	宇服로 57 823	냠服로 5가 580-1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7청	샾로	1	-	10,3 (6,0)	특/도 로	보하 전용 도로	810 (3,15)	宇 尼 로 57 [281	면동 1가83	-	서울시고시 제2016-139호 (2016,5,19.)	7017 서울로
7청	소로	1	-	10,3 (4,15)	 돠	보하 전 8 도로	810 (6,88)	宇 尼 로 57 [281	면동 1가83	-	중구고시 제2019-47호 (2019.5.2.)	7017 서 <u>울로</u>
7청	쥱	1	30	20-25	잡 도로	알 도로	308 (103,5)	宇服로 57月10	宇服로 571693	-	-	구역장에 때문 도로입
7청	광로	3	60	40	간선 도로	알 도로	700 (157,6)	냠문 (광장20)	552가	-	건별·과 제45호 (78.6.15.)	구역장에 따른 도로입

- ※ 제4-2·7지구 사업시행자는 현금 기부채납의 일부를 사용하여 양동숲길 보행로 조성사업 완료
- ※ ()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7 8		규모		141751 ILO	wizi.lo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중로	1	30	==1 :1 = ==1e1	• 양동숲길 보행로 조성사업 범위를 편입함에 따라 도로
기정	광로	3	60	• 구역 내 도로편입	광로3-60, 중로1-30호선 구역 내 편입(선형 및 면적 변경 없음)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편 ᆈ 地	시설명	위	걘	기형	변경	변경	최초결정일	비교
				길이	3,15m	-	3,15m		
		연결	ı kılın ərəl	폭	6m	-	6m	서왕교시	6자구
기정	소리	<u>통로</u> 1	남服로카 528알태	높이 (지프 라) (A)	4,8~5,8m	-	4,8~5,8m	제2016-139호 (2016,5,19,)	や r (地
				면적	18,3m²	-	18,3m²		
				길이	6,88m	-	6,88m		
		연결	남[문화]	폭	4,15m	-	4,15m	서왕교시	8-1지구
7정	셮리	년2 통로3	537일대	높이 (지표 라)	0~8,92m (-8,57~8,92m)	-	0~8,92m (- 8,57~8,92m)	저[2019-47호 (2019.5,2,)	で (性)
				면적	28,56m²	-	28,56m²		

※ 연결통로1: 7017서울로와 양동6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연결통로3: 7017서울로와 양동8-1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나. 공간시설

제2993호 30-16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면		시설의			면 책(㎡)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중감	변경	최초 결정일	비교
			계		2,478.9	감) 334.5	2,138,4	-	=
기정	1)	공원	소공원	냠대문로5가 541-3번지 알태	2,138.4	-	2,138,4	건설부고시 제380호 ('78,11,30,)	-
지면	2	공원	소공원	냠대문로5가 627번지 알래	334,5	감) 334.5	-	서고 제2020-32호 (2020,1,16,)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원	소공원 폐지 - 위치 : 남대문로5가 627번지 알대 - 면적 : 334.5㎡	• 대지 내 개방형녹지(의무기준 이상)조성에 따른 기존 공원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78	도면표시	01+1	위치 면적(㎡)				비고
구분	번호	71^1	기정	중감	변경	최초 결정일	=174
신설	1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	증) 1,173.0	1,173.0	-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2) 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건폐율(%)	용적률(%)	<u>높</u> 이(m)	최초 결정일	в <u>]э</u>
신설	1	남대문로5가 395번지 알대	ৰ্গ ০ 06	ीं० 00 0	90 ০টি	-	시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위치 : 남대문로5가 395번지 알대 면적 : 1,173,0㎡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사회복지시 설과 중복결정)

3)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m)		ala ziziol	비 <u>고</u>
TE	<u> </u> 도전표시원(호	70	기정	중감	변경	최초 결정일	= <u> 1</u>
기정	1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852,1	-	852,1	서울시고시 제2021-717호 (21,12,23,)	공공임대주택 공간적 범위 결정
신설	2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	증) 1,173.0	1,173.0	=	공공 청사 중복결정

4) 사회복지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건떼율(%)	용적률(%)	높이(m)	최초 결정일	н <u>] э</u>
기정	1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ৰ্কি 00	ৰ্ক <u>ি</u> 000	50 이하	서울시고시 제2021-717호 (21.12,23.)	공공임대주택 공간적 범위 결정
신설	2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1ৰ্কা০ 06	600 이하	90 이하	-	공공청 사 중 복 결정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世別	地水品
신설	2	사회복지 시설	 시회복지사설 산설 위치: 남대문로5가 395번지 알태 면적: 1,173,0m² 	 시회복자사설 활용을 위한 사설 산설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자구	• 1, 2, 3, 4-1, 4-2·7, 5, 6, 8-2, 11·12자구	기 결정 획자계획 유지
소단위정비지구	-	660~1,000m² ০ ৳}
소단위관리구	• 9-3, 9-4, 9-5, 9-6	660m² 이하
존치지구	• 8-1, 9-1, 9-2	기 결정 획자계획 유지
보존지구(보전정비형)	• 10	기 결정 획자계획 유지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제2993호 30-18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일반정비지구 : 변경

714	자	주용 도		นไว
구분	^#	7명	변경	비고
①	• 1, 2, 3, 4-1, 5, 6자	업무	=	완료지구
2	 4-2·7자구 	숙박, 업무	숙박, 업무, 판매	시행사
3	 8-2지구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가능	=	시행사
4	• 11·12자구	업무	-	시행사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장비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 (상징 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나.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 : 변경없음

구분	자구	주용 도	지정용도(저층)	권장용도(전충)	비고
1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상업지역 내	가로활성화용도	1종-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	소단위정비지구	건축가능한 용도	(1종·2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

다. 존치지구 : 변경없음

	구분	지구	주용도	비교
Ī	①	• 8-1지구	업무	존치지구
	2	• 9-1지구	업무	존치지구
	3	 9-2지구 	공공업무	존치지구

라. 보존지구(보전정비형): 변경없음

	구분	지구	주용도	비고
İ	1	• 10지구	종교	보존지구

[※] 존치지구는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건폐율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74	717	olal	건	1월	바]고	
구분	자	위치	가정	변경	1 2 <u>1 1</u>	
디지방생일	1, 2, 3, 4-1, 5, 6자구	-		-	-	
	8-2자구, 11·12자구	-	60% olp-	-	-	
	4-2·7지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위 駵얜)	र्ग % 02	개방형 녹지 확보	
소단위청위기소	-	-	5층 이하: 80% 5층 초과: 60%	-	-	
소단위된다구	9-3, 9-4, 9-5, 9-6자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ৰ্ত্তা০ _{%08}	-	-	
7.517	8-1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 বিণ %06	-	-	
존차가	9-1, 9-2자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삼) 통해완화병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지구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	-	

나. 용적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4	717	위치		용적률		비고
구분	자구	71	기준	허용	상한	- hr
	1, 2, 3, 4-1, 5, 6자구	-				-
일반정비지구	8-2자구, 11·12자구	-	600	800	α	-
	4-2:7지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
소단위정바가구	-	-	600	800	α	-
소단위관자구	9-3, 9-4, 9-5, 9-6자구	냠대문로5가 542번지	600	800	α	-
721017	8-1지구	냠대문로5가 537번지				-
쥐자족	9-1, 9-2자구	600 남대문로5가 541번지		800	α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7구	남대문로5가 5 44번 지	600	800	α	-

다.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2023. 4. 21

714	지구	위치	눞	ام	비고	
구분	नार मन		기정	변경	212	
	1, 2, 3, 4-1, 5, 6지구	-	90m ○ ō}	-	-	
일반정비지구	8-2지구, 11·12지구	-	90m ○ ō}	-	-	
	4-2·7지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90m ○ ō}	150m 이항	-	
소단위정비지구	-	-	50m ০টি}	-	-	
소단위관리지구	9-3, 9-4, 9-5, 9-6지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30m ০টি}	-	-	
7 = 1 = 1 =	8-1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00 01=1		-	
존치지구	9-1, 9-2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90m ० ₸}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990m ो ष्टे	-	-	

※ 단, 소단위정비지구는 간선변(20m이상)등 접도 및 구역별 여건에 따라 심의를 통해 70m이하까지 완화가능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일반성비지구(완료, 시행지구) : 변경

7 14	까또	바무	0%1	300	건매율	용적률	높이	uln
구분	喇	면척	위	주용도	(%)	(%)	(m)	비고
기정	17뀨	3,828.4	냠뜐로5가 581반시	업무	56,9	978,8	108,7	완료자구
기정	27.开	5,435,4	냠쁀로카 631번시	업무	39,2	747,5	98,0	완료자구
기정	37开	5,346,5	냠t문로5가 827변지	업무, 주거	50.0 이타	1,000.0 이타	120 이타	완료자구
기정	41자구	2,429.4	냠쁀로5가 500반시	업무	47.0 이타	615.0 이타	84.0 야타	완료자구
기정	4-277开	20,016,2	냠먠로5가 395번지 알래	숙박, 업무	60,0 아타	540.0 이타	86.5 야카	, 2 -11-11-1
변경	4-272卍	19,177.7	냠뭰로5가 395번지 알래	숙박, 업무, 핀매	50.0 이타	1,147 이타	150,0 이타	사항구
기정	外子	6,107.1	냠t문로5가 267변지	업무	38,0 야타	760.0 이타	84,7	완료자구
기정	6分子	3,081.1	냠쁀로5가 526반시	업무	60,0 아타	731.0 ० हि	72,0 야타	완료자구
기정	8-2×卍	1,676.1	냠문로카 539번	업무	60,0	600/800/α	१वं० 0,0 0	시행사
기정	11-12자꾸	2,683,8	냠뜐로5가 580번지	업무	60,0 ০৳}	1,126 야타	90,0 ° † े	사항구

[※] 제4-2·7지구 소유자의 정비계획변경제안('23.04.)에 따른 변경

[※] 일반정비지구는 2030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가능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 향후 완료지구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 시 각 지구의 최종 정비계획 결정사항을 기정으로 보고 계획할 것

나. 소단위관리지구 : 변경없음

7 14	가구 또는 확시구분		ole)	20-	건떼율	용적률	높이	בוט
구분	명칭	면적	위치	주용 도	(%)	(%)	(m)	비교
기정	9-3자구	97.2	냠대문로5가 575번지	-	<i>ৰি</i> ০ 08	600/-/α	30 ০টি	-
기정	9-4자구	97.1	냠대문로5가 555번지	-	ৰ্বি০ 08	600/-/α	ৰ্ক OE	-
기정	9-5자구	96.9	냠대문로5가 554번지	-	ৰ্বি০ 08	600/-/α	30 ০ চি	-
기정	9-6자구	178,6	냠대문로5가 542번지	-	ৰ্বি০ 08	600/-/α	ৰ্ক OE	-

다. 소단위정비지구: 변경없음

구분	가구 또는	- 획지구분	위치	30-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TE	명칭	면적	#1^1	주용 도	(%)	(%)	(m)	- l-r
-	-	-	-	-	(5층이하) 80 이하 (5층초과) 60 이하	600/800/α	50 이하	-

라. 존치지구 : 변경없음

구분	가도한학자분		유	20-	건매율	용색률	높	비교
十七	쀙	면척	 	78 도	(96)	(%)	(m)	마
기정	유17규	3,740.4	냠뿐로5가 537번지	-	-	-	-	-
기정	91지구	10,583,4	냠뿐로5가 541번지	-	-	-	-	-
기정	9-2×卍	3,013,3	냠뜐로5 1 567번	-	=	-	-	-

※ 존치지구는「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준에 부합할 경우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마. 보존지구(보존정비형) : 변경없음

	가구 또는	학자구분	0353		건떼율	용적률	높이	
구분	먱칭	면적	위치	주용 도	(%)	(%)	(m)	비고
기정	107구	2,815,2	남대문로5가 544번지	종교	কি 06	600/800/α	পূৰ্ব 00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완화 가능

바.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양동구역 평균 부담률 유지 : 19.5% 이상
- 기반시설 계획조정으로 축소된 부담량은 건축 시설물 등으로 부담
 - ※ 일반정비·소단위정비·존치·보존지구(보전정비형)는 정비사업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부담 의무
 - ※ 소단위관리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획지별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 가능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건축한계선>

- 일반정비, 존치, 보존지구 : 가로활성화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간선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계획
- 소단위정비지구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계획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계획
- 소단위관리지구
 - 소단위관리지구는 협소한 도로의 가로연속성을 고려하여 미지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존치지구	• 한강대로, 퇴계로, 소월로, 소월로2길, 후암로, 8-2 서측도로변 : 3m	_		
건축한계선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안아내로, 작가로, 고실로, 고실로소급, 수업로, 0.2 시급포도된 · JIII			
	소단위정비지구	• 11지구 : 대지경계선에서 1m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소단위관리지구 : 3층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2m 지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소단위관리지구	9-3,9-4,9-5,9-6, 11·12지구 3층 이상의 건축물 : 대지경계선에서 2m 지정	-

나,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설치를 유도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유도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6/116/1	소단위정비지구	• 조성위치 - 보행결철점 및 간선가로변	-		

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변경없음

- 1) 규제사항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민간부문 일반재생관리지침을 전제로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
- 2) 권장사항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민간부문 일반재생관리지침을 전제로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

10. 정비계획 변경(안)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Ⅲ.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2·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2023. 4. 21

7 19	rsi 51		면 적(㎡)		비율	,,,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합계	20,350.7	-	20,350.7	100.0	1
	소 계	334.5	증) 838.5	1,173.0	5.8	-
정비기반	소공원	334.5	감) 334.5	-	-	-
시설 등	공공청사	-	증) 1,173.0	1,173.0	5.8	-
	사회복지시설②	-	증) (1,173.0)	(1,173.0)	-	
획지	획지	20,016.2	감) 838.5	19,177.7	94.2	1

■ 지구 변경사유서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변장유
4-2·7자구	남대문로5가 395일대	청바가반사설 등 면적 변경 334.5㎡ → 1,173.0㎡ 획지 면적 변경 20,016.2㎡ → 19,177.7㎡	•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따른 토자이용계획 변경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7.3	mi 31		면 적(㎡)	비율	ul a	
구분 명칭		명정기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0,350.7	-	20,350.7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74	구분 시설의 종류			면 잭(㎡)		최초결정일	ul ¬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화조 등 요 등	비고
폐지	소공원	남대문로5가 627일대	334,5	감) 334.5	-	서고 제2020-32호 (2020,1,16,)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대용	변경사유
2	공원	• 소공원 폐지 - 위치 : 남대문로5가 627번지 일대 - 면적 : 334,5㎡	• 대지 내 개방형녹지(의무기준 이상)조성에 따른 기존 공 원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책(㎡)		최초 결정일	비고
TE	번호	Tri	가정	중감	변경	최조 등 9년	- hr
신설	1)	남대문로5가 548번지 알대	-	증 1,173.0	1,173.0	-	시회복지시설 중복결정

2) 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건매율(%)	용적률(%)	높이(m)	최초 결정일	비 <u>고</u>
신설	1)	남대문로5가 395번지 알대	60 ০৳	600 o किं}	90 이하	-	시호]복지시설 중복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118	변장유
신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위치: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면적: 1,173.0㎡ 	•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공공청사 산설 (사회복지시설과 중복결정)

3)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7 14	도면표시	olal		면적(m²)		*1 * *********	רוע	
구분	번호	위치	기정	중감	변경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	증 1,173.0	1,173.0	-	공공 청사 중복결정	

4) 사회복지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건폐율(%)	용 적률(%)	<u>높</u> 이(m)	최초 결정일	н <u>] э</u>
신설	2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60 이하	ৰ্কৃত 00 0	90 이하	-	공공 청사 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 용	변경사유
신설	2	사회복지시설	 시회복지시설 신설 위치: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면적: 1,173,0m² 	• 사회복사사업 활용을 위한 사업 산업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라.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계획

제2993호 30-26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74	시행면적	대시면적	정비기반등	순부담			w1 7			
구분	(m²)	(m²)	시설면적(㎡)	면적(m)	토지	건축물	현금	합계	비고	
기정	20,350,7	20,016,2	334,5	-	-	-	-	-	19.5%	
변경	20,350,7	19,177.7	1,173.0 (820.1) ²⁻¹⁾ (1,984.2) ²⁻²⁾	3,977.3 ^{₹3)}	5,8	4.0	9,8	19,5	19.5%	

- ※ 사업시행자는 현금 기부채납의 일부를 사용하여 양동숲길 보행로 조성사업 완료
- ※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면적 계획기반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주1) "()"는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건축물 공사비) 토지환산면적임
- 주2) "()"는 현금 기부채납 토지환산 면적임
- 주3) 순부담면적 = 토지 기부채납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 + 현금 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

2)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계획

구분	위		시설의	정비	기반시절 등 부담면	탁(m)	비고		
T*E			중류	종류 기정		변경	-1		
			소계	-	-	-	-		
저4-2:7	냠뜐로 5가	395	공공청사 및 사회복자사설 (토지)	-	증) 1,173.0	1,173,0	-		
자구					건축물	i	(증)820.1)	(820,1)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현	i	(증)1,984.2)	(1,984.2)	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구역 구분		가구 또	는 확자구분			정비	개량계	틱 (동)		
구분	명칭	면 적(㎡)	맹	면 적(㎡)	위치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찰거 이주	비교
기정	제4-2·7지구	20,350.7	획지	20,016,2	남대문로5가 395일대	1	=	-	1	=	-
변경	제4-2:7지구	20,350.7	획지	19,177.7	남대문로5가 395일대	1	-	-	1	-	-

- 이 하 여 백 -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업무시설)

구분	구역·	구역구분 가구 또는 학자 7분 위치		주된 용도	건 떼을 (%)	용적률 (%)	푸)(m)	비고		
	명칭	면 석(㎡)	명칭	면 젹(㎡)		**	(99	(90)		
기정	양동구역	20,350,7	확지	20,016,2	남대문로5가	쉭박, 업무	59.5 १व	540 이타	최고 86,5m 이하	
변경	제4-2:7자구	20,350,7	확	19,177.7	395	업무,숙박, 판매	50 ०)हो	1,147 ০)চ}	최고 150m 이하	

건축물 건매율·용적률 원회에 용적률

관한 시항

- 용적률 : ①+②+③ = 1,147.44% → 1,147.00% 이하 적용
- ① 기준용적률 : 600%
-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0%

	목표	인센티브 완화 요건	인센터]브량
	녹지 생태공간	•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100.0%	
계 획	친환경	•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200.0%
유 도	개발	• 전기차충전소 설치	20.0%	적용
	역사보전	• 건축자산 등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나 사회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50.0%	

③ 상하용적류 이세티브 : 347 44%

3 7 Y	상한·봉식물 인센티브 : 347.44%							
	공공시설 등 제공 응공청사, 현금)	•산정식 =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1,2×α건축물)} = 800%×{(1,3×토지 1,173,0㎡÷19,177,7㎡) + (1,2×건축물 820,1㎡÷19,177,7㎡) + (1,0×현금 1,984,2㎡÷19,177,7㎡)} = 187,44%						
	공개공지 초과조성	•산정식 = 허용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 대지면적) = 800%×(3,835,5㎡÷19,177,7㎡) = 160%						

○ 최고높이 : ① + ② = 150.03m → 150m 이하 적용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 141.03m •산정식 = 적정 건폐율 50% × (기준높이(90m) + 20m) ÷ (80% -녹지율 개방형 녹지율(41%)) = 50%×(기준높이 90m+20m)÷(80%-41%) = 141.03m 건축물 용적률높이 높이 원회에 관한 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량 : 9.0m 시항 •산정식 = 기준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대지면적)} 공개공지 초과제공 $= 90 \text{m} \times \{(3,835,54 \text{m}^2 \times 1/2) \div 19,177.7 \text{m}^2 = 9.0 \text{m} \}$ 건축물의 건축선에 ○ 소월로2길 : 건축한계선 3m 관한 계획 ○ 획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 개빙형 녹기계 ○ 일반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걔타 ○ 대지 내 공지 - 소월로2길변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 설치

■ 변경사유 :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개방형 녹지 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높이 완화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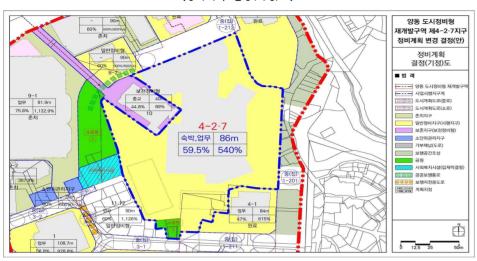
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구역 구분		가구 또는	· 확자분			건매율	용적률	높이	
구분	명칭	면 잭(㎡)	₩	면 적(㎡)	위치	주용 도	(%)	(%)	(m)	비교
신설	제4-2:7자구	20,350.7	공공청사	1,173.0	남대문로5가 395일대	공공청사, 사회복자시설	60.0	600 ० ₹}	1ৰ্ল ০ 0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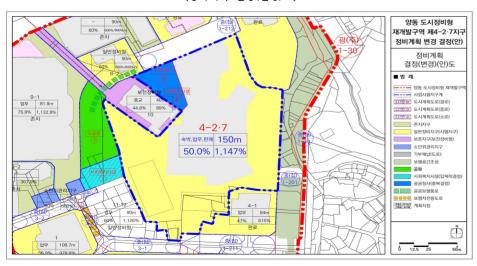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5.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Ⅳ. 기 타

제2993호 30-30

- 1. 공람기간 : 2023, 4, 21.(금) ~ 2023, 5, 22.(월)(31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4)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